내과분과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"제4조에 규정된 9개 내과분과위원회"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

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내과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,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해당 분과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해당 분과의 관련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분과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 조 (위원장 및 간사)

1.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,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2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간사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,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 의결사항을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회의)

1.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2.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3.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었다.